

제24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경제국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 2022년도 제3회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279호
- 나. 제출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2. 12. 21.
- 라. 회부일자 : 2022. 12. 21.

##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3. 추경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종예산	당초예산	간주처리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안 (명시 이월)
<b>계</b>		<b>771,332</b>	<b>622,602</b>	<b>82,276</b>	<b>12,007</b>	<b>54,447</b>	<b>53,069</b>
일반회계		753,865	608,146	80,016	12,007	53,696	50,869
특별회계		17,467	14,456	2,260	0	751	2,200
	의료급여기금	820	636	17	-	167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642	291	-	-	351	
	주차장	16,005	13,529	2,243	-	233	2,200

- 2022년 제3회 구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 최종 규모는 7,713억 3,161만 1천으로, 당초예산 6,226억 183만 1천원, 제1회 추경 120억 660만원, 제2회 추경 544억 4,717만 6천원, 간주처리 822억 7,600만 4천원임.
- 금회 제출된 구 전체 명시이월액은 총 48건 530억 6,873만 6천원임.

#### 4. 명시이월

- 부서별 총괄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건수	이월액	연번	부서명	건수	이월액
<b>계</b>		<b>48</b>	<b>53,068,736</b>	10	건축과	2	69,532
1	자치행정과	1	1,900,000	11	문화체육과	7	4,862,813
2	교육지원과	2	8,685,003	12	청소행정과	4	620,800
3	지역경제과	3	10,693,000	13	주차관리과	2	2,200,000
4	일자리청년과	2	466,905	14	건설행정과	1	3,939,257
5	어르신 장애인과	1	457,000	15	도로과	2	1,926,973
6	가족정책과	4	5,129,046	16	치수과	1	2,520,000
7	아동청소년과	1	20,000	17	보건정책과	2	1,154,927
8	주거정비과	3	461,929	18	의약과	1	86,000
9	공원녹지과	9	7,875,551				

- ※ 최근 3년간 명시이월 현황

(단위 : 개 / 천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사업수	46	64	50	48
이월액	39,127,144	50,850,972	35,386,207	53,068,736

○ 기획경제국 명시이월 사업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세 부 사 업 명	2022 예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계	교부세(금)	국시비보조금	구 비
합 계 : 2개 부서 / 5건		13,178,149	11,159,905	0	105,500	11,054,405
지 역 경 제 과 (3건/10,693,000천원)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 (시설현대화)	9,994,984	9,797,984			9,797,984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 (주차환경개선)	815,016	815,016			815,016
	호우피해 전통시장 전기설비 복구 지원	80,000	80,000		80,000	
일 자 리 청 년 과 (2건/466,905천원)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고용장려금 지원	38,500	25,500		25,500	
	금천 청년꿈터 신축	2,249,649	441,405			441,405

○ 부서별 명시이월 사업 내역

가. 지역경제과 명시이월 : 3건 10,693,000천원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2022 예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사 유)
			계	특 별 교부세(금)	보조금	구비	
합계(1건)		10,890,000	10,693,000	0	80,000	10,613,000	
1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 (시설현대화)	9,994,984	9,797,984			9,797,984	[연도 내 지출 불가] 2022년 12월 공종별 공사 계약이 체결되어 공사비 기성금 집행이 불가
2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 (주차환경개선)	815,016	815,016			815,016	[연도 내 지출 불가] 2022년 12월 공종별 공사 계약이 체결되어 공사비 기성금 집행이 불가
3	호우피해 전통시장 전기설비 복구 지원	80,000	80,000		80,000		[연도 내 지출 불가] 현재 설계용역 발주 증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

## 나. 일자리청년과 명시이월 : 2건 466,905천원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2022 예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사 유)
			계	특 별 교부세(금)	보조금	구비	
합계(1건)		2,288,149	466,905	0	25,500	441,405	
1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고용장려금 지원	38,500	25,500		25,500		[집행시기 미도래] 금년 10월~12월 접수분은 2023년에 집행
2	금천 청년꿈터 신축	2,249,649	441,405			441,405	[연도 내 지출 불가] 관급자재 구매 및 공사설계 변경시 공사비 증액분 낙찰 차액 활용을 위해 이월

### 5. 검토결과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7조1)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적용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2)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 세입·세출예산에 그 사유를 밝혀 미리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제도로써

지역경제과는 독산동 우시장 그린 푸줏간 조성 시설현대화사업, 독산동 우시장 그린 푸줏간 조성 주차환경개선사업, 호우피해 전통 시장 전기 설비 복구지원사업, 3개사업 10,693,000천원으로 사유는 연도 내 지출불가임.

일자리청년과는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마련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금천 청년꿈터 신축사업 총 2개사업 466,905천원으로 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 및 연도 내 지출 불가임.

- 1)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2)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상 5개 사업의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적법한 것으로 사료됨.

## **6.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5조
- 「지방재정법」 제7조, 제45조, 제50조

붙임 : 관계법령 1부. 끝.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4. 5. 28.>

③ 삭제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

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11. 8. 4.]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  
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  
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  
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  
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  
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8. 4.]